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4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재편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,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(총 정원 변동없음)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(3급  $\Delta 2 \rightarrow 2\cdot 3$ 급 +2)

나.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(3급 +2명)

- (폐지) 남북협력추진단 ( $\Delta 1$ )
- (신설) 주택공급기획관·균형발전기획관·자원회수시설추진단 (+3)

다. 수상사업부(한강사업본부)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

- (본청) 일반직 4급  $\Delta 2 \rightarrow$  (사업소) 일반직 4급 +2

라.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

- (5급이하)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( $\Delta 3$ )
  - ▶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(통계자료관리요원)  $\Delta 1 \rightarrow$  6급이하 +1 조정사항 포함

- (연구직) 미술관·박물관 건립 업무 관련 증원(연구관 +1, 연구사 +1)

마.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(+6명)

- 의회사무처 5급이하 +6명

바. 조직·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(20명) 및 인력보강(+2명)

- ‘인권담당관’(본청) → 감사위원회(합의제) 산하로 이관(20명)
  - ▶ (본 청) 4급 △1명, 5급 이하 △19명 → (합의제) 4급 +1명, 5급 이하 +19명
-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(6급이하 +2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,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 기구의 설치운영), 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, 제30조(정원의 규정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## 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22. 7. 7. ~ 7. 11.) 결과: 의견제출 1건
  - 의회사무처 추가 6명 증원 요구(일부반영)
  - 의회사무처 정원 범위 내 속기직 2명 재배치 예정(규칙 개정사항)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 첨부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10,562명”을 “10,53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395명”을 “40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204명”을 “226명”으로 한다.

같은 표 일반직 계란, 2·3급란, 4급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, 연구직 계란, 연구관란,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689					
2·3급	26	21		1	3	1
4급	255	152	19	8	68	8
5급 이하 소계	10,241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28					
연구직 계	407					
연구관	63	5		34	24	
연구사	344				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19,13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u>10,562명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395명</u></p> <p>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<u>204명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: <u>10,534명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: <u>401명</u></p> <p>5. ----- : <u>226명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4]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11,70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계</b>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계</b></td> <td><b>10,69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4</td> <td>19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5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6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4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2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계</b></td> <td>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상당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3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<b>총계</b>	11,702						<b>정무직계</b>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<b>일반직계</b>	<b>10,691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4	19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5	19	8	66	7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244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29						<b>별정직계</b>	37						4급상당	5	3	2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11,70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계</b>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계</b></td> <td><b>10,689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6</td> <td>2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2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4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28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계</b></td> <td>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상당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3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<b>총계</b>	11,702						<b>정무직계</b>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<b>일반직계</b>	<b>10,689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6	21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2	19	8	68	8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241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28						<b>별정직계</b>	37						4급상당	5	3	2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11,7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계</b>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계</b>	<b>10,69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4	19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5	19	8	66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4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계</b>	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상당	5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11,7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계</b>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계</b>	<b>10,689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6	21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2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계</b>	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상당	5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							개정안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<b>연구직 계</b>	<b>405</b>						<b>연구직 계</b>	<b>407</b>					
연구관	62	4		34	24		연구관	63	5		34	24	
연구사	343						연구사	344					
<b>지도직 계</b>	24						<b>지도직 계</b>	24					
지도관	2			2			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			지도사	22					
<b>교육공무원 계</b>	541						<b>교육공무원 계</b>	541					
총 장	1			1			총 장	1			1		
교수 등	465			465			교수 등	465			465		
조 교	75						조 교	75			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**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**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**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총 정원 변동이 없어,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,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9)